

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

2026 년 시설보강사업 장애인 검진시설 리모델링 공사(건축·기계)

제 1 조(목적)

이 특수조건은 통영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「2026 년 시설보강사업 장애인 검진시설 리모델링 공사(건축·기계)」의 원활하고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- ①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, 계약예규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,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,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한다.
-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며,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.
- ③ 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,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른다.

제 3 조(공사개요)

- ① 공 사 명 : 2026 년 시설보강사업 장애인 검진시설 리모델링 공사(건축·기계)
- ② 공사현장 :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, 통영적십자병원
- ③ 공사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90 일
- ④ 공사내용 :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건축 및 기계설비 리모델링 공사
- ⑤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를 주된 공사로 하고 이에 수반되는 기계설비공사를 부대공사로 포함하여 시행한다.

제 4 조(계약상대자의 기본의무)

-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, 시방서, 공사내역서 및 기타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목적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자재, 장비 및 현장관리체계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이 의료기관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환자, 보호자,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과 진료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병원 시설물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.

제 5 조(현장 및 설계서 확인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구역, 기존 시설 및 배관·배선, 환자·방문객 동선, 자재 반입·반출 경로, 소음·분진 제한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, 시방서 및 현장여건 간 상이·누락·오류 또는 시공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의 임의 판단 또는 사전 승인 없이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(착공 및 공정관리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1. 착공계
- 2. 현장대리인계 및 재직증명서
- 3. 예정공정표
- 4. 산출내역서
- 5. 안전보건관리계획서
- 6.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
- 7. 공사구역 가설 및 출입통제계획

8. 소음·분진·진동 억제계획

9. 화재예방 및 비상대피계획

10. 폐기물 반출계획

11.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사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

②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,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와 만회공정계획을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병원 진료일정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공정 순서 및 작업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7 조(병원 운영 중 공사)

① 본 공사는 병원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므로 계약상대자는 환자 및 병원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를 단계적·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공사구역과 병원 운영구역은 가설벽, 방진막 등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
③ 환자 및 방문객이 이용하는 통로를 차단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임시통로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병원의 진료·검사·입원업무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은 발주기관과 작업일시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소음·분진·진동 및 감염관리)

① 계약상대자는 철거·천공·절단·용접 등 소음, 분진, 진동 또는 냄새가 발생하는 작업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작업시간 및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분진 발생 구역은 밀폐·차단하고 필요시 집진기, 음압장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설비를 사용하여 분진이 병원 운영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, 이물질 등이 병원 시설·장비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④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안전·보건관리)

- ① 계약상대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·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.
- ③ 작업자는 안전모, 안전화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.
- ④ 추락, 감전, 화재, 낙하물 및 기타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안전시설과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⑤ 화기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소화기 배치, 화재감시자 지정 등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⑥ 공사 중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조치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시설물 보호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구역 주변의 의료장비, 기존 시설물, 벽체, 바닥, 천장, 출입문 및 기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공사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이 파손 또는 오염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- ③ 공사로 인하여 전기·급수·배수·냉난방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1 조(자재의 사용 및 승인)

- ①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정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②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제품사양서, 시험성적서, 인증서, 견본 및 기타 품질확인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승인받지 않은 자재 또는 설계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미 반입 또는 시공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철거·교체하여야 한다.
- ④ 특정 제품의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2 조(공사시공 및 검사)

-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,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공기준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공상태 및 자재품질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검사 결과 설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거나 시공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은폐공사의 확인)

- ①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배관·배선·방수·보강 등의 은폐공정은 은폐하기 전에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은폐공정의 시공 전·중·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발주기관의 확인 없이 임의로 은폐한 경우 발주기관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의 철거 또는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(설계변경 및 추가공사)

- ①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상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누락·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항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④ 긴급한 안전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5 조(건설폐기물 및 현장정리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분리·보관·반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공사폐기물은 병원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가급적 당일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현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폐기물 반출 시 환자 및 방문객의 이동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고 발주기관과 사전에 반출시간 및 동선을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법령상 필요한 경우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6 조(하도급)

-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·일괄하도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.

제 17 조(공사근로자 및 노무비 관리)

-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노무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발주기관이 노무비,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 등의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8 조(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정산)

-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금액 산정 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.

1. 국민건강보험료 : 2,256,181 원

2. 국민연금보험료 : 2,981,046 원

3. 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296,462 원

4. 퇴직공제부금비 : 1,443,454 원

5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: 5,543,653 원

②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 법령 및 「정부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등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후정산한다.

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보전비 등 관계 법령상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규정과 설계내역에 따라 정산한다.

제 19 조(기성 및 대가 지급)

① 기성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, 공사사진, 노무비 지급내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성 및 준공대가의 지급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산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20 조(준공검사 및 준공서류)

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현장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준공검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

2. 준공내역서

3. 준공도면

4. 공사 전·중·후 및 은폐공정 사진대장

5. 주요 자재 시험성적서·인증서 등 품질관련 서류

6. 각종 시험·검사 및 시운전 결과서
7.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자료
8.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
9. 기계설비 및 설치장비의 사용설명서·보증서 등
10. 하자보수 관련 서류
11. 그 밖에 발주기관이 준공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

③ 준공검사 결과 미비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
제 21 조(하자보수)

-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③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긴급한 하자로서 환자안전 또는 병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 22 조(지체상금)

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.

제 23 조(공사중지 및 작업조정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적인 작업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1. 환자안전 또는 병원운영상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2.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
3.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또는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공하는 경우

4. 감염관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5. 그 밖에 공사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공사중지에 따른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과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24 조(출입 및 보안관리)

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인력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 외의 인원을 공사구역에 임의로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공사인력은 병원에서 정한 출입 및 보안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공사 중 알게 된 환자정보, 의료정보 및 병원 내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병원 내부의 환자, 의료진 또는 시설물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촬영하거나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5 조(일일 작업종료 및 청소)

①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종료 후 공사구역 및 주변 통로를 청소하여야 한다.

② 공구, 자재 및 폐기물은 환자 및 방문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.

③ 작업 종료 후 화재, 감전, 누수, 낙하물 등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 26 조(손해 및 책임)

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병원시설, 의료장비, 환자, 보호자, 직원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가입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 27 조(원상복구)

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철거·이동·변경한 시설물과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완료 전까지 원상복구하고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.

제 28 조(해석 및 기타사항)

- ① 본 특수조건과 설계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예규 등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계약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.
- ③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

통 영 적 십 자 병 원